#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51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·허 영·김수흥

한병도 · 김경협 · 정춘숙

이상헌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비공개 대상 정보로의 분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.

그런데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확보를 저해할 수 있어 체결된 입찰계약의 입찰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.

이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, 입찰참

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제1항제5호 본문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중 "입찰계약"을 "입찰계약(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,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 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입찰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하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	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
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	
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 <u>입</u>	5 <u>입</u>
<u>찰계약</u> 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	찰계약(체결된 입찰계약에 관
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	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
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	기준,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
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	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
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	정보는 제외한다)
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	
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	
이유가 있는 정보. 다만, 의사	
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	
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	
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	
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	
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	
여야 한다.	

	,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